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이상목 의원 (찬성자 11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201 호

다. 발의일자 : 2017. 10. 31.

라. 회부일자 : 2017. 11. 1.

2. 제안이유

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장에
게 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
통해 대피소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(안 제43조의2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

[표] 개정내용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|--|
| <신 설> | <p>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|

- 서울시는 금년 5월 ‘지진 옥외대피소, 실내구호소 확충 계획(상황대응과-7264, 2017.5.)’을 수립하여 지진대피소 확충 및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,
- 2017년 9월 기준 서울시 지진대피소는 옥외대피소 1,721개소와 실내구호소 563개소로 총 2,28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, 이 중 650개소에만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

파악되어 설치가 미진한 실정이라 하겠음.

- 한편, 행정안전부(구 국민안전처)에서는 2017년 4월 지진대피소 표지판에 대한 KS국가표준 등 관련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통일된 규격의 표지판 설치를 위해 「지진 대피소 표지판 설치 기준」을 마련하였으며,
- 지방자치단체의 표지판 설치 확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소요예산 일부를 지원할 예정¹⁾에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짐.

1) 국민안전처 정책설명자료(2017.4.6.)

1. 지지 및 지진해일 대피소, 손쉽게 확인하세요.
2. 국민안전처, 여름철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!